

-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專門委員 檢討報告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2월 10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0일

제안 이유

○ 충북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 골자

○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하여야 하며,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함(안 제5조)

-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북 도민의 지위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민감사관은 주민의 감사청구사항, 집단민원 발생사항, 도의회가 지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 의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안 제2조)
  - 도민감사관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재직자, 해당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 하되,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조)
  - 또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4조)
  - 도지사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토록 하는 한편, 도민감사관의 감사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 아울러 도민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조)

-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도정감사 기능의 강화와 도민권익 보호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도민감사관 위촉대상을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5급이상 공무원에 재직중에 있던 자는 대부분 60세이상 고령 퇴직자임을 감안, 생산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여겨지므로,
- 5급이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의회의원으로 재직 또는 활동했던 자 등으로 보다 폭넓게 위촉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민감사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